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4.

발 의 자 : 임문영 · 박해철 · 김성범
박용갑 · 김 현 · 이재강
전은수 · 박선원 · 신정훈
문금주 · 이광희 · 곽상언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.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임.

그렇다고 정당 간에 당원명부를 대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를 집중시키면 당원의 개인정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큼.

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중복을 확인하되,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만을 대조하도록 함. 대조 후 일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, 국가와 다른 정당이 알 수 있는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함. 또한

당적확인 사무에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이 중당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의 입당신청인과 당원을 대상으로 당적 중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이에 참여하도록 하며 그 밖의 정당은 임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).
- 나. 암호화된 변환정보를 이용한 대조, 다른 정당 당원의 신원 비식별, 처리정보의 최소화 및 대조 후 삭제, 상대 정당을 특정하지 않는 결과 통지 등 당적확인체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(안 제24조의2제3항).
- 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이 보관하는 변환정보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,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(안 제24조의2제4항).
- 라. 당적 중복을 통지받은 정당은 본인에게 알리고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후, 중복이 확인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).
- 마. 당적확인 사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·제공과 당적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확인 요청을 금지하고, 위반시 벌칙을 정하며, 참여 의무 위반과 협조 거부·방해에 대하여 과

태료를 부과함(안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, 제58조제2호,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·제4호).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복수당적 확인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2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(이하 “당적확인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1. 참여정당(제2항에 따라 당적확인에 참여하는 정당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입당을 신청한 사람

2. 참여정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사람

② 「정치자금법」 제27조(보조금의 배분)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당적확인에 참여하여야 하며, 그 밖의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적확인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적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당적확인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(이하 “변환정보”라 한다)를 이용하여 참여정당 간의 당원명부를 대조할 것

2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참여정당이 변환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참여정당의 당원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할 것
3. 당적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 및 처리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, 대조가 완료된 후 당적확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할 것
4. 당적확인의 결과는 2 이상의 참여정당의 당원명부에 동일한 사람에 관한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한정하여 해당 참여정당에 통지하고, 상대 정당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

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적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참여정당이 보관하는 변환정보를 대조할 수 있으며,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른 당적확인의 대상 및 시기, 제2항에 따른 당적확인 참여절차, 제3항에 따른 변환정보의 대조방법과 절차, 그 밖에 당적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24조의3(당적확인 결과의 통지 및 처리 등) ① 참여정당은 제24조의 2제3항제4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사람에게 2 이상의 정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람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소명한 결과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으로 되어

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정당은 당적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누구든지 당적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당적확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누구든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당적확인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적확인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소명의 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당적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, 그 밖에 당적확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58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당적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당적확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

제59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당적확인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적확인을 요청한 자

제62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당적확인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
4.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확인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4조의2(복수당적 확인) ① 중</u> <u>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2조제2</u> <u>항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</u> <u>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 <u>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</u> <u>이상의 정당의 당원명부에 등</u> <u>재되어 있는지를 확인(이하 “당</u> <u>적확인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</u> <u>1. 참여정당(제2항에 따라 당적</u> <u>확인</u><u>에 참여하는 정당을 말한</u> <u>다. 이하 같다)에 입당을 신청</u> <u>한 사람</u> <u>2. 참여정당의 당원명부에 등재</u> <u>된 사람</u> <u>② 「정치자금법」 제27조(보</u> <u>조금의 배분)에 의한 보조금 배</u> <u>분대상정당은 당적확인</u><u>에 참여</u> <u>하여야 하며, 그 밖의 정당은</u>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</u> <u>정하는 바에 따라 당적확인</u><u>에</u> <u>참여할 수 있다.</u> <u>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적</u> <u>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</u> <u>요건을 갖춘 당적확인체계를</u>

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(이하 “변환정보”라 한다)를 이용하여 참여정당 간의 당원명부를 대조할 것

2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참여정당이 변환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참여정당의 당원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할 것

3. 당적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 및 처리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, 대조가 완료된 후 당적확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할 것

4. 당적확인의 결과는 2 이상의 참여정당의 당원명부에 동일한 사람에 관한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한정하여 해당 참여정당에 통지하고, 상대 정당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

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적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

<신 설>

서 참여정당이 보관하는 변환 정보를 대조할 수 있으며,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른 당적확인 대상 및 시기, 제2항에 따른 당적확인 참여절차, 제3항에 따른 변환정보의 대조방법과 절차, 그 밖에 당적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24조의3(당적확인 결과의 통지 및 처리 등) ① 참여정당은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사람에게 2 이상의 정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람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소명한 결과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정당은 당적의 중복

	<u>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③ 누구든지 당적확인</u>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<u>당적확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④ 누구든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당적확인</u>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적확인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. <u>⑤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소명의 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당적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, 그 밖에 당적확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</u>
제58조(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8조(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)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당적확인</u> 에 관한 사무를 처리

2. (생략) 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(생략) ② (생략) 제6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<u>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당적 확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</u>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당적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적확인을 요청한 자</u>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62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당적확인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</u> 4. <u>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확인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</u>
---	--

<u>3.</u> (생략) ② (생략)	<u>자</u> <u>5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